

#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1991. 7. 1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1. 제안이유

내무부 세제 22670-5882 ('91.6.19)호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  
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 공무원을 포함한다)에서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포함)으로 개정하고(제2조 제1항) 창발전적인 제안으로 세정발  
전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및 민간인은 삭제함

(제2조 제3항)

○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 2원화(징수세액의 100분의 5, 100분  
의 10)하던 것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수액  
을 징수한 자에 한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  
으로 단일화

○ 제안의 심사결정 규정 삭제 (제4조)

조례 제 호

##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및 제6호를 삭제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u>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 공무원)을 포함한다.</u></p> <p>2. <u>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u></p> <p>3. <u>창발전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u></p> <p>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p>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건당 200원 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분의 2, 2,000원 이상에 대</p>	<p>제1조(목적) -----</p> <p>-----</p> <p>-----</p> <p>-----</p> <p>제2조(지급범위) -----</p> <p>-----</p> <p>-----</p> <p>1. <u>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u></p> <p>2. -----</p> <p>3. <u>(삭제)</u></p> <p>제3조(지급구분) ① -----</p> <p>-----</p> <p>1.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p>

현행	개정 (안)
<p>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p>	
<p>2. <u>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10</u></p>	<p>2. (삭제)</p>
<p>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p>	<p>3. ----- ----- ----- ----- ----- ----- ----- -----</p>
<p>4. 납세의무발생(등기일포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p>	<p>4. ----- ----- ----- -----</p>
<p>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자: 징수금액의 100분 5</p>	<p>5. ----- -----</p>
<p>6. <u>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1건당 3만원</u></p>	<p>6. (삭제)</p>

현행	개정 (안)
<p>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p> <p>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p>	<p>② ----- ----- -----</p> <p>③ 제1항 제5호에 ----- ----- -----</p>
<p>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제안을 세정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p> <p>② 제안방법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삭제)</p>
<p>제5조(대장비치) ①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 과정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p>	<p>제5조(대장비치) ① ----- ----- ----- -----</p> <p>② ----- -----</p>
<p>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동장은 매월 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 ----- -----</p>

현행	개정 (안)
<p>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p> <p>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② ----- -----</p> <p>③ ----- ----- -----</p> <p>제7조(포상금 지급) ----- ----- -----</p>